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지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350

발의연월일: 2025. 5. 2.

발 의 자:박지혜·이소영·위성곤

박정현 · 염태영 · 한정애

전현희 • 권향엽 • 송재봉

이용우 · 윤준병 · 김성환

박지원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(안 별표 2 제72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1034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2. 「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